

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#. 통선을 이용한 공공시설물 등 점검·보수인원 수송 가능 여부

질 의 요 지	회 신 내 용
<p>(‘13. 10. 10, 해양경찰청)</p> <p>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통선을 해상에 존재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점검·보수 인원 수송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</p>	<p>(‘13. 10, 항만운영과)</p> <p>○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면 항만용역업 장비로 등록된 통선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무역항 등 항만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‘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용도’로 사용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</p> <p>○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는 통선을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</p>